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구정방향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부록 제653호 2011. 9. 28.(수)

【훈 령】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22호(인천광역시연수구 인터넷 방송 운영 규정) 1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702호(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8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연수구 인터넷 방송 운영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구 인터넷 방송국 구축에 따라 인터넷 방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과 직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 소식과 각종 행사, 교육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 하여 명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의 정의 및 방송 대상에 대한 규정(제2조, 제4조) ○ 방송 요청 및 제한 규정(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개최 10일 전까지 주관 부서에 문서, 메일 또는 전화로 방송 요청 - 시행부서에서 인터넷 방송을 원치 않을 경우 주관 부서로 방송 제한을 요청 ○ 방송 편성 및 외부 방송에 대한 규정(제6조~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울행정시스템의 주간 일정 및 월간 일정을 기초로 방송편성 - 정보 공유 기회의 확대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VOD서비스 제공 ○ 인터넷방송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방송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인터넷방송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협의회는 방송 대상, 외부 방송, 콘텐츠 관리, 그 밖의 인터넷 방송 발전 및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함

인천광역시연수구 인터넷 방송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9. 28.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 222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인터넷 방송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터넷 방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과 직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 소식과 각종 행사, 교육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방송”이란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컴퓨터로 시청할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 또는 VOD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시간 중계 서비스”란 회의, 행사, 교육 등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그 영상과 음성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3. “VOD 서비스”란 회의 및 행사, 교육, 외주 제작 콘텐츠 등을 녹화 또는 보관하였다가 언제라도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내부 방송”이란 내부 네트워크로 연결된 직원들에게만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5. “외부 방송”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6. “인터넷 방송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하여 영상 및 음성 신호를 가공하거나 전송·저장하는 것으로 카메라 설비·음향설비·엔코딩(Encoding)서버·디코딩(Decoding)서버·스트리밍(Streaming)서버 등을 말한다.
7. “시행 부서”란 회의, 행사 및 교육 등을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주관 부서”란 방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회의, 행사, 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시행 부서의 방송제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2장 인터넷 방송 운영

제4조(방송 대상) 주관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정, 동정, 의회소식, 정책회의
2. 교육·교양·문화·건강·엔터테인먼트
3.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5조(방송 요청 및 제한) ① 시행 부서에서는 행사 개최 10일전까지 주관 부서에 문서 또는 메일, 전화로 방송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행 부서에서는 제4조에서 정한 방송 대상 중 인터넷 방송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관 부서로 방송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 부서에서는 통신이 폭주하여 시스템의 정상 동작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 한 경우에는 방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주관 부서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울행정시스템 업무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방송 편성) ① 주관 부서에서는 서울행정시스템의 주간 일정 및 월간 일정을 기초로 하여 방송 편성을 하여야 한다.

② 주관 부서에서는 다음 일주일 동안의 인터넷 방송 계획을 매주 마지막 근무일에 서울행정시스템 업무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 방송) ① 주관 부서에서는 정보 공유 기회의 확대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VOD 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② 주관 부서에서 구민에게 VOD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행부서와 방송 공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 부서에서는 구민에게 홍보나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규정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공중망 사업자, 중계 유선 방송 사업자 등을 포함한 방송 사업자망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홈페이지 운영) 주관 부서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 방송과 외부 방송은 별도로 구분하여야 하며, 서버는 물리적으로 독립되게 구성하여 보안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9조(콘텐츠 관리 등) ① 주관 부서에서는 내부 방송용 홈페이지와 외부 방송용 홈페이지에 제공할 콘텐츠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 부서에서는 규정 주요 시책이나 행사 등의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에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외주업체에 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주관 부서에서는 콘텐츠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인터넷 방송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해 구에 인터넷방송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 대상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방송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콘텐츠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인터넷 방송 발전 및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의회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 소집은 전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주관 부서의장이 되며, 서기는 영상홍보담당이 된다.

제3장 인터넷 방송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11조(주관 부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관부서는 영상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제12조(책임자 지정) ①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관 부서에서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는 방송 운영, 시스템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 주관 부서 과장
2. 부 : 영상홍보 담당

제13조(다른 통신망과의 연동) 주관 부서에서는 방송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영상 신호 종합 처리 시스템(HEAD END) 또는 다른 통신망과 접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스템의 관리) ① 관리 책임자는 방송과 관련한 영상·음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 운영자와 보조 운영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 부서에서는 방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 시험·정기 점검 등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인력·예산·기술 및 경제성 등의 문제로 시스템을 자체 유지보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스템의 신·증설) 시스템의 신·증설은 주관 부서에서 시행하며, 주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설계 용역 발주 전에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교육) 주관 부서의 장은 방송에 관한 업무 발전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기술 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 - 702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11.7.1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내지 제2조)
-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비용추계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4조 내지 제5조)
-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 작성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032-810-7051, www.yeonsu.go.kr/
(참조:기획감사실장)]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 ②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도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안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의안의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나. 추계 결과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다. 재원조달 방안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하며,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표시)

4. 부대의견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작성자 : △△국 △△ 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작성자 : △△국 △△ 과장 ○○○